1-2 개발기술사업화자금

□ 대상

○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
* 단,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(초격차 분야(참고1-1) 기술은 5년)

① 중소벤처기업부,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기술
② 특허,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
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
* 신기술(NET), 전력신기술, 건설신기술, 녹색기술인증,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
④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
⑤ 특허청의 IP-R&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
⑥ 국내외의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
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
⑧ 기술혁신형 중소기업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의 자체 기술
⑨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(OI) 문제해결형(Top-Down) 최종 선정 기술

□ (융자방식) 직접대출, 성장공유형 대출, 투자조건부 융자, 이차보전

※ 성장공유형 대출 및 투자조건부 융자의 세부 지원대상, 지원조건, 지원절차 등은 추후 공고

※ 개발기술사업화(중소기업 R&D 이차보전)사업의 세부 지원대상, 지원조건, 지원절차 등은 추후 공고

* 신청대상 : 정부 R&D의 '24~'25년 계속· 종료 과제 연구개발비가 당초 협약 금액 대비 감액된 기업으로 R&D 전문기관**과 협약 변경 후 관련 확인서 등 증빙을 발급받은 기업

** 전문기관 :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·평가·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등에 따라 지정된 기관

□ 대출조건

구분	대출 조건
대출한도	(직접대출) 연간 30억원 이내 (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) *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중 지원대상 ①, ②, ③, ④, ⑤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60억원 이내,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
대출기간	(직접대출, 시설)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 (직접대출, 운전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
대출금리	(직접대출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기 타	•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 (기업 수행)